

의안번호	2126650
의 퇴 인	강은미 의원
회 답 일	2024. 5. 16.
추 계 번호	24C02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군 복무 및 출산 시 지원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지원 시점을 변경하며 실업크레딧에 대하여 전액 국가가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9,251억원, 2028년 2조 7,756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9조 5,749억원(연평균 1조 9,150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안 제18조 등)	—	—	5,019	13,579	12,580	31,178	6,236
육아크레딧(안 제19조)	6,865	9,706	11,208	11,625	12,482	51,887	10,377
실업크레딧(안 제19조의2)	2,386	2,459	2,534	2,612	2,694	12,686	2,537
추가재정소요 합계	9,251	12,165	18,761	27,816	27,756	95,749	19,15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 제51조(기본연금액)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게 병역의무 수행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100%를 적용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의무지출성
2	안 제19조(육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경우 첫째 자녀 12개월, 둘째 자녀 추가 18개월, 셋째자녀부터 추가 24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최대 100개월) ※(현행)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추가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최대 50개월)	의무지출성
3	안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실업크레딧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현행) 재원별 비용 부담률: 자부담 25%, 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기금 25%, 일반회계 25%	의무지출성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 제51조(기본 연금액)	○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2	안 제19조(육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3	안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추이를 반영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동 법률안은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해당 지원의 수급 조건 충족 시점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이 명시한 대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대상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기간 산입을 신청한 시점에 지원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개인별 신청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추계가 어려움
 - 다만, 법률안의 제안이유에 지원 시점을 병역의무 이행 완료 시점 및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려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급 조건 충족 시점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 수급 조건 충족 시점에 지원할 경우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해주는 방식에서 해당 기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 현행 제도보다 확대된 기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후 수급자들이 수령할 연금액도 증액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서는 향후 5년 간 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만 제시

- 연금액 증액 효과는 대상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단기간 내 발생하지 않음

-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의 경우,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할 A값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을 활용
 -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2년 말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
-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대상자 수는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과의 정합성을 위해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기초로 산출
- 출산크레딧과 실업크레딧에 대하여 국가재정 내에서 재원을 변경(기금 → 일반회계)하는 것은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나, 실업크레딧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던 비용(보험료의 25%)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개정안 부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동 법률 시행 이후 병역의무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과 시행 시점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얻은 자 중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개정규정을 적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군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안 제18조 등)

- (군 입대 연령) 2021년 현역병 평균 입대 연령인 21세 가정
- (병역의무 수행 기간) 2021년 말 기준 군 복무 중이거나 2021년 중도 귀가¹⁾한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의 복무유형(복무기간)별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연도별·복무유형별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연도별·복무유형별 복무기간과 대상자 수를 가중평균하여 대상자 전체의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 현행법은 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최소 1개월 이상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미만 복무자를 합하여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표 2]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군복무 기간

(단위: 개월)

연 도	육군 등 ¹⁾	해군 등 ²⁾	공군	사회복무요원	평균 복무기간 ³⁾
2021	18	20	21	21	18.9

주: 1)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2) 해군, 해양경찰

3) 평균 복무기간은 유형별 군 복무기간과 유형별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추정치)를 가중평균한 복무기간을 가리킴

자료: 국방부, 병무청, 소방청,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21세 입대하여 18.9개월 의무복무 후 23세에 제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상 23세 남성인구 대비 관련 병역 입대자 비율 및 직역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를 산출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는 현역병²⁾, 전환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며, 2021년 말 기준 군 복무자와 2021년에 복무기간 도중에 병역의무가 면제된 자(중도 귀가자)를 모두 포함함

1) 현행법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모두 포함함

2) 징집병을 가리킴(장기복무로 전환하지 않고 제대한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가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체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대비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음)

- (병역 입대자 비율) 2021년 29세 남성 인구(39.3만명) 대비 2010년 18세부터 2021년 29세까지 군복무크레딧 대상이 되는 병역으로 입대한 사람 수(31.8만명³⁾) 비율(80.9%)을 적용
- (직역연금 가입률) 2021년 29세 남성 인구 대비 남성 직역연금 가입자 수(2.9만명) 비율(7.3%)을 적용하여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차감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의 9%를 적용

[표 3] 군복무크레딧 보험료 지원 단가 추계: 2024~2028년

(단위: 천원)

	2024	2025	2026	2027	2028
국민연금 A값(A)	2,989	3,150	3,322	3,446	3,575
보험료 지원 단가(A×9%)	269	283	299	310	322

주: 보험료 지원 단가는 천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동 법률안 적용 시 추가재정소요는 제도 변경에 따른 총재정소요이며 2026년에 처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현행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을 대상으로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2040년대 처음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월별 군복무 완료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군복무 완료자에 대하여 총 18.9개월 지원 기간 중 6.9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고 나머지 12개월의 지원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3) 병무청 제출자료

[표 4]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및 지원 시점 추계

(단위: 명)

입대 연도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 수	지원시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24	243,259	243,259 (6.9개월)	243,259 (12개월)				
2025	211,786		211,786 (6.9개월)	211,786 (12개월)			
2026	197,877			197,877 (6.9개월)	197,877 (12개월)		
2027	196,634				196,634 (6.9개월)	196,634 (12개월)	
2028	184,213					184,213 (6.9개월)	184,213 (12개월)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도 지원 기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점을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019억원, 2028년 1조 2,580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조 1,178억원(연평균 6,236억원)으로 추계됨

[표 5] 군복무크레딧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	-	5,019	13,579	12,580	31,178	6,2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출산 시 가입기간으로 산입(안 제19조)

- (육아크레딧 지원 대상자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0세 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하되 2021년 기준 31~35세 인구 대비 직역연금 가입자 수 비율(7.5%)을 차감하여 활용
 - 직역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산율이 동일하다고 가정

- (출산 순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⁴⁾에서 제시된 2022년 기준 출생아의 출산순위별 비중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2022년 출산순위별 출생아 비율: 첫째 58.2%, 둘째 33.7%, 셋째 6.8%, 넷째 이상 1.2%
 - 다섯째 이상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 출생아 중 0.3%에 불과하여 재정소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섯째 이상 자녀는 넷째로 가정하여 추계
- 개정안 시행 첫해인 2024년 둘째 이상 출산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출산한 자녀까지 합산하여 개정규정 적용, 2025년 이후 둘째 이상 출산자 중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추산한 후 합산하여 개정규정 적용
 -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얻은 자 중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2022년 출산순위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을 적용하여 2023년 이전에 얻은 자녀 수를 합산하여 2024년 출산자에게 적용⁵⁾

[표 6] 지원 연도별 지원 기간

지원 시작 연도	지원 기간	연도별 출산 순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4	78개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4개월		첫째	둘째	셋째				
	30개월			첫째	둘째				
	12개월				첫째				
2025	24개월					넷째			
	24개월					셋째			
	18개월					둘째			
	12개월					첫째			
2026	24개월						넷째		
	24개월						셋째		
	18개월						둘째		
	12개월						첫째		
2027	상동							...	
2028	상동								...

주: 음영있는 셀이 2024년 이후 출산자에 대한 이전 자녀 소급 적용에 따른 지원 기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2023년 12월 1일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5) 첫째 33세, 둘째 34세, 셋째 35세, 넷째 이상 36세

- 동 법률안 적용 시 추가재정소요는 제도 변경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유지 시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현행 제도 유지 시 재정소요는 2023년 출산크레딧 재정소요를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소요의 연평균 증가율(45.1%)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

[표 7] 현행 출산크레딧 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출산크레딧 재정소요	507	742	1,115	1,656	2,246	45.1

주: 결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의 9%를 적용([표 3] 참고)
- 월별 출생아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출생아에 대해서는 12개월 분이 그 해에 지출되고 나머지 지원분은 12개월 단위로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다만 지원을 받는 도중에 추가 자녀 출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한 지원이 끝난 후 다음 자녀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

[표 8] 출산 순위별 지원 기간 예시

출산 연도	출산 순위	지원 기간	회계연도별 지원 기간						
			출산연도 (D)	D+1년	D+2년	D+3년	D+4년	D+5년	D+6년
2024	첫째	12개월	12개월						
2025	둘째	18개월	12개월	6개월					
2026	셋째	24개월	6개월	12개월	6개월				
2027	넷째	24개월		6개월	12개월	6개월			
2024	둘째	30개월	12개월	12개월	6개월				
2025	셋째	24개월		6개월	12개월	6개월			
2026	넷째	24개월			6개월	12개월	6개월		
2024	셋째	54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6개월		
2025	넷째	24개월				6개월	12개월	6개월	
2024	넷째	78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6개월

[표 9] 지원 시작 연도별 대상자 수 및 지원 기간

(단위: 개월, 명)

지원 시작 연도	총 자녀 수	지원기간	대상자 수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24	1	12	51,834				첫째							
	2	30	56,948				첫째	둘째						
	3	54	12,531				첫째	둘째	셋째					
	4	78	3,063				첫째	둘째	셋째	넷째				
	2	30	57,249			첫째	둘째							
	3	54	11,822			첫째	둘째	셋째						
	4	78	2,906			첫째	둘째	셋째	넷째					
	3	54	11,868		첫째	둘째	셋째							
	4	78	2,744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	78	2,723	첫째	둘째	셋째	넷째							
2025	1	12	48,544					첫째						
	2	30	60,374					첫째	둘째					
	3	54	13,225					첫째	둘째	셋째				
	4	78	3,213					첫째	둘째	셋째	넷째			
2026	1	12	51,764						첫째					
	2	30	63,726						첫째	둘째				
	3	54	13,891						첫째	둘째	셋째			
	4	78	3,351						첫째	둘째	셋째	넷째		
2027	1	12	54,987							첫째				
	2	30	66,943							첫째	둘째			
	3	54	14,510							첫째	둘째	셋째		
	4	78	3,474							첫째	둘째	셋째	넷째	
2028	1	12	58,171								첫째			
	2	30	69,939								첫째	둘째		
	3	54	15,067								첫째	둘째	셋째	
	4	78	3,580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현행 최대 50개월(첫째 18개월, 둘째부터 자녀당 12개월)에서 100개월로 확대(첫째 12개월, 둘째 18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24개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6,865억원, 2028년 1조 2,482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조 1,887억원(연평균 1조 377억원)으로 추계됨

[표 10] 육아크레딧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현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A)	33	47	69	100	144	393	79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B)	6,898	9,754	11,277	11,724	12,627	52,279	10,456
추가재정소요(B-A)	6,865	9,706	11,208	11,625	12,482	51,887	10,3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안 제19조의2)

- 개정안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던 비용(보험료의 25%)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① 현행 제도 유지 시 실업크레딧을 수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부담 25%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정소요와 ② 구직급여 수급자 중 기존 제도의 실업크레딧을 수급하지 않던 사람에게 국가가 100% 실업크레딧을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합산하여 산출
 - 현행 실업크레딧은 수급자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 수보다 실업크레딧 수급자 수가 더 적지만 100% 국가 지원으로 변경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가 모두 실업크레딧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
- 현행 제도 유지 시 실업크레딧을 수급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부담 25%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정소요는 2023년 실업크레딧 자부담 비용(320 억원)을 기준으로 해당 비용의 2019~2023년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산출

[표 11] 실업크레딧 자부담 수납금액

(단위: 백만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실업크레딧 자부담액	24,035	35,739	39,790	34,285	31,968	7.4

주: 실 수납금액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신규 실업크레딧 수급자에 대한 재정소요는 대상자 수와 대상 기간, 지원 단가를 각각 가정하여 산출
- (신규 실업크레딧 수급자 대상자 수) 2023년 월평균 실업급여 수급자 수 대비 월평균 실업크레딧 수급자 수의 비율(22.1%)을 차감하여 개정안에 따른 신규 실업크레딧 대상자 수를 산출, 이때 월평균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2022~2023년 월평균 실업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율(2.3%)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수 비율은 99.5%에서 100.0%로 매년 증가
 - 현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서 월평균 수급자 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만 가용하므로 이를 구직급여 수급자 수에 대한 근사치(proxy)로 활용

[표 12] 월평균 구직급여 수급자 수 및 실업크레딧 수급자 수 추계

(단위: 명)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월평균 구직급여 수급자 수(A)	662,773	678,191	693,789	709,747	726,071	742,770	759,854
신규 실업크레딧 대상자 수 (B=A×77.9%)	-	-	540,462	552,893	565,609	578,618	591,926

주: 2022~2023년은 월평균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근사치(proxy)로 사용, 2024년부터 2028년은 추계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신규 실업크레딧 수급자의 지원 기간) 2021~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지원 기간(156.3~162.0일)⁶⁾을 감안하여 매년 6개월씩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기간 실업크레딧의 평균 지원 기간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신규 실업크레딧 수급자의 지원 단가) 현행 실업크레딧의 지원 단가를 고려하여 1인당 월 6.3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현행 실업크레딧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 수준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되 인정소득 상한액을 7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2023년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의 95.2%가 인정소득 상한액을 적용받음

6)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하여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 「실업급여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성 분석」(2024.5.) 자료 참고(동 보고서는 고용보험행정통계DB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안내를 받는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의 대부분이 인정소득 상한액 이상 소득자인 상황이므로, 70만원의 9%(국민연금보험료율)에 해당하는 6.3만원을 단가로 설정
- 추계결과, 실업크레딧에 대한 자부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2,386억원, 2028년 2,694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조 2,686억원(연평균 2,537억원)으로 추계됨

[표 13] 실업크레딧 전액 국가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기존 실업크레딧 지원	343	369	396	425	457	1,990	398
신규 실업크레딧 지원	2,043	2,090	2,138	2,187	2,237	10,696	2,139
추가재정소요	2,386	2,459	2,534	2,612	2,694	12,686	2,5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